



2007. 4. 18.(수) 10:30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경 제 투 자 본 부)

산업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I.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1. 총 세입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 감	%	비고
계	2,395,931,796	100	2,255,719,069	100	140,212,727	6.2	
일반회계	1,915,049,865	79.9	1,771,103,014	78.5	143,946,851	8.1	
특별회계	480,881,931	20.1	484,616,055	21.5	△ 3,734,124	△ 0.8	

2. 경제투자본부소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 감	%
세 입 합 계		73,737,391	100	73,456,839	100	280,552	0.4
세외 수입	계	2,460,821	3.3	2,339,926	3.2	120,895	0.2
	경상적 세외수입	148,524	0.2	148,524	0.2	0	0.0
	임시적 세외수입	2,312,297	3.1	2,191,402	3.0	120,895	0.2
보조금	계	59,526,570	80.8	59,366,913	80.8	159,657	0.2
	국고보조금	19,346,570	26.3	19,186,913	26.1	159,657	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180,000	54.5	40,180,000	54.7	0	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11,750,000	15.9	11,750,000	16.0	0	0.0

3. 경제투자본부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 경제투자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오창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 4,85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23억 1,22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3억 4,657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오송외국인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금 117억 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05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Ⅱ.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 총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 감	%	비고
계	2,395,931,796	100	2,255,719,069	100	140,212,727	6.2	
일반회계	1,915,049,865	79.9	1,771,103,014	78.5	143,946,851	8.1	
특별회계	480,881,931	20.1	484,616,055	21.5	△ 3,734,124	△0.8	

2. 경제투자본부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 감	%	비고
계	123,054,401	100	106,609,742	100	16,444,659	6.1	도일반 회계 : 5.1%
경제정책팀	25,492,201	20.7	25,108,141	23.5	384,060	0.4	
투자유치팀	31,060,337	25.2	17,815,667	16.7	13,244,670	12.4	
전략산업팀	35,030,020	28.5	32,789,060	30.8	2,240,960	2.1	
통상외교팀	15,530,934	12.6	15,484,994	14.5	45,940	0.0	
기업지원팀	15,925,217	12.9	15,411,880	14.5	513,337	0.5	
자원관리팀	15,692	0.01	0	0	15,692	0.0	

3. 경제투자본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및 재래 시장 환경개선관련 사업비와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국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 경상예산은 123억 1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6%인 9억 7,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사업예산은 1,107억 5,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6.2%인 154억 6,635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사업비 중
 - 국내 선진시장 비교 견학(p254, 사업비 1,000만원)은 120명이 국내 선진시장을 비교견학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맞춤형 인턴제 운영(p255,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청년장년 실업자의 구인난을 해결을 위해서 지원기간 6개월과 의무고용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지만 1년 후에 또 다른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상세한 설명이 필요.
 -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p257, 사업비 3,000만원)과 바이오제품 안정성시험비용 지원산업(p257, 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p267, 사업비 6,000만원)은 투자유치실적만으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선호지역인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등 일부 시·군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p267, 사업비 9억원)은 충청북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33조에 의거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도내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 현황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이전비 지원이나 시설투자비 지원 시점을 준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황

총 9개소(청주시 3개소, 충주시 2개소, 제천시 1개소, 음성군 2개소, 진천군 1개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

(제정) 2007-01-19 규칙 제 2565호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④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①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도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은 제1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별지 제6호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경제투자본부 -
‘07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산업경제전문위원 신 순섭 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230억 5,440만원으로써 우리 도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6.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66억 974만원보다 164억 4,46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5.4%가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2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오창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 4,85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3억 1,22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3억 4,657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1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오송외국인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금 117억 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05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4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관련 사업비와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국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 경상예산은 123억 1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6%인 9억 7,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사업예산은 1,107억 5,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6.2%인 154억 6,6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사업비 중

- 국내 선진시장 비교 견학사업은 120명이 국내 선진시장을 비교견학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장년 실업자의 구인난을 해결을 위해서 지원기간 6개월과 의무고용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지만 1년 후에 또 다른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과 바이오제품 안정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사업은 투자유치실적만으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선호지역인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등 일부 시·군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에 의거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도내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 현황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및
제19조의 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의 지원시점을
준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